

2023년도

문화재위원회(문화재분과)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4. 11.(화) 14:30~
- 장 소 : 군산 콘텐츠팩토리 회의실 (구 군산세관 본관 인근)
- 안 건 : 총 1건
 - 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 현상변경(3차,재심의)

문 화 재 위 원 회

1. 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 현상변경(3차,재심의)

가. 제안사항

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 주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
- '22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2.10.25.) : **부결**
 - 사유 : 건물높이 등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- '22년 제1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2.12.6.) : **부결**
 - 사유 : 건물높이 등 규모가 커서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- '23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3.1.17.) : **보류**
 - 사유 : 사적문화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유산을 고려한 건물배치 형태, 색채, 동선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
- '23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23.3.28.) : **보류**
 - 사유 :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방안 마련 후 재심의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○ ○○ ○○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사적 「구 군산세관 본관」('18.8.6. 지정)
 - 소재지 :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4-7 (장미동 49-38)
- (3) 세부내용
 - 신청위치 : 군산시 장미동 1-15번지 외 13필지
 - ※ 허용기준 : 3구역(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)
공통사항(건축물 최고높이 20m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)
 - ※ 전북 문화재보호조례 :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영향 검토
 - ※ 이격거리 :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320.81m 이격

○ 세부내용 : 숙박시설 신축

- 용도 : 근린생활시설, 숙박시설(호텔)

구분	3차	3차, 재심의(금회)
건축면적/연면적	1,970.77㎡ / 21,258.51㎡	1,970.77㎡ / 21,258.51㎡
건축규모	지하4층, 지상11층	지하4층, 지상12층
최고높이	38.75m	41.75m